



### 작성요령

이 증명서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해당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시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.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

2.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

「소득세법」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